적용일: 2005년 8월 1일 진료분

◎ 신설

1.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의 인정기준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1차로 시행 가능함.

〈아 래〉

- ① 신장이 한 개인 경우
- ② 양측성 결석
- ③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 ④ 요독증(azotemia)이 있는 경우
- ⑤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 ⑥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출)

나. 금기증

- ① 출혈경향이 있는 사람
- ② 신동맥류
- ③ 임신 등
- 다. 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

대부분의 결석은 KUB, 초음파촬영, IVP로 진단이 가능하므로 CT는 1차 방사선검사에서 진단이 불분명할 경우 또는 IVP 가 불가능한 azotemia, dye allergy 및 radiolucent stone 환자의 진단 및 추적검사시 단계별로 실시토록 함.

- ▶ 신설사유 :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함.
 - · 고가 장비인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적정진료를 위해 적응증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음.

▶ 참고 사항 :

- 관련 단체 및 관련학회 의견
- · 비뇨기과학 제3판, 대한비뇨기과학회
- · 임상신장학, 대한신장학회, 2001
- · Smith's General urology 16th EDITION
- · CAMBELL'S UROLOGY 8th EDITION, VOLUME 4
- · Eur Urol. 2001 Oct;40 (4):362-71. Guidelines on urolithiasis.
- · Recent Advances in Endourology 4 (p63–83) Clinical Guidelines in Urological Management
- · Arch Esp Urol. 2000 Mar;53(2):116-22. Renoureteral malformation and lithiasis. Therapeutic approach]
- · Nephrol. 2000 Nov-Dec;13 Suppl 3:S71-82. Lithotripsy in the treatment of urinary lithiasis. 등

◎ 변경

연번	제 목	변경 전	제목	변경 후
연번 1	최소 침습성 추 간판절제술(경피 적 내시경 추간 판 절제술, 경피 적 수핵흡입술,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의 편심성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40세 이상에서는 본 술식의 유용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함.	최소 침습성 추 간판절제술의 인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
				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전서를 첨부). 나. 금기증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 변경사유: 환자의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6주 이내 조기 시행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고(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도관의 삽입위치 · 병변의 정도 등에 따라 중심성탈출도 시술이 가능한 점 및 40세 이상인 경우에서도 본 술식 의 유용성이 있다는 논문 등을 참조하여 일부내용을 변경하였고,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금기증을 추가 하였음.

▶ 참고사항:

- 관련학회 의견
- · 척추외과학, 석세일, 2004
- \cdot Unremitting low back pain guideline.: North American Spine Society phase III clinical guidelines for multidisciplinary spine care specialists.
- · 임상연구문헌: Anthony Tung Yeung, Md, and paul Moody Tsou, MD; Posterolateral endoscopic excision for Lumbar disc Herniation Surgical Technique, Outcome, and Complication in 307 consecutive Cases; SPINE 2002(Volume 27), Number 7, p722-731 · Anetna Clinical Policy Bulletins (2005, 3.4)

연번	제 목	변경 전	변경 후
2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 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은 시술부위별(상·하누점), 시술방법별(일시적, 반영구적)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인정한다.
		- 다 👲 -	- 다 음 -
		경우에는 하누점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한다. 나. 하누점폐쇄술을 실시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누점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다. 일시적 누점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일차 Collagen implant 삽입술 시술 후 이차적으로 시행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 (Punctal Plug 등 삽입술)은 시술날짜 불문하고 소정 금액의 50%를 인정한다. 라.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 (Punctal Plug 등 삽입술)은 시술날짜 불문하고 소정 금액의 50%를 인정한다. 라.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 (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1) 일차적으로 인영구절 누점폐쇄술 (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2) 인공누액 사용으로도 효과가 없는 등의 심한 안구건조증 (3) 특정 상병(눈물샘 종양적출술, 방사선치료후, 과거의 화상, Steven Johnson syndrome, 쇼그렌증후군 등)과 동반되어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태에 따라 상·하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한다. 나. 하누점폐쇄술을 실시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 후 상누점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다. 일시적 누점폐쇄술 실시 후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일차 Collagen implant삽입술 시술 후 이차적으로 시행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은 시술날짜 불문하고 소정 금액의 50%를 인정한다.라.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1) 인공누액 사용으로도 효과가 없는 등의 심한안구건조증(2) 특정 상병(눈물샘 종양적출술, 방사선치료후, 과거의 화상, Steven Johnson syndrome, 쇼그렌증후군 등)과 동반되어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3) 이전에 삽입했던 Punctal Plug 등이 소실된 경우(4) 인공누액의 부작용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점안이 어려운 경우

▶ 변경 사유 :

- ·문구정리
- · 라항 (1)의 불필요한 문구 삭제